- (4) 슬래브 타설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교량 받침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교량받침의 임시 잠금장치는 슬래브 타설 후 제거토록 한다.
- (5) 슬래브가 곡선구간으로 편구배가 있을 경우에는 쏠림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횡버팀목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하는 경우 조립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립 고정 및 미고정 데크 플레이트는 위험표시를 하고, 단계별 시공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 구간에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개구부가 발생하는 경우 추락방지망 설치 등 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7)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방지를 위해 견고한 지반에 설치 및 정격하중을 준수하고, 근로자는 견 고한 안전대걸이시설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, 작업 반경 내에 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8) 거푸집 빔, 브라켓(Bracket), 장선재, 합판 설치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,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실시,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을설치 등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9) 차량 통행구간에는 슬래브 하부에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3> 낙하물 방호선반